



나.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 소재지역이 현재시점 이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로서, 그 신규지정일 전까지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
### 제 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

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고가주택을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### 제 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유예)

제7조에도 불구하고, 아래의 사유의 경우 제 7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본 대출 변제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1. 무주택 가구가 본 대출기간 동안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제 5조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: 본 대출의 만기일자와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### 제 9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

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<sup>주3)</sup>의 주택 관련 대출<sup>주4)</sup>이 제한됩니다. 단, 제 8조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약정위반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.

주3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4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 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고가주택을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